성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 안 자 : 성 주 군 수
2. 개정이유
 ○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를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단체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하기 위함.
3. 주요내용
 가. 자원봉사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 추가(안 별표)
4. 참고사항
 가. 관련법령 : 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」
 나. 예산조치 : 2017년도 1억원 미만 반영
 다. 입법예고 : 의견없음 [2017. 8. 24. ~ 9. 13]
 라. 성별영향평가분석 : 해당사항 없음
 마. 규제심사 : 해당없음
5. 검토의견
 ○ 본 개정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를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단체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
 ○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“안 별표”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에 10호를 신설하여 “단체의 발전과 활동을 위하여 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시설의 개보수 및 장비 지원”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 ○ 법리 검토결과 「자원봉사활동기본법」등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단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·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 다만, 성주군 종합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단체 수가 60여 곳에 이르고 있고 단체가 운영하는 시설도 다수가 있으므로 향후 시설의 개보수 및 장비 지원 시 무분별한 지원으로 인해 군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지원기준을 명확히 하여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.